

전주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66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6686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7. 2 선고 2018가단113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4. 22.

판결 선고 2020. 5. 2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7. 2. 선고 2018가단113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43,388,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3986호 손해배상(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③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3986호 손해배상(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97,809,283원의 채권과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249,632,579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등기 최종말소일이 2006. 12. 29.임에도 제2차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6. 14.로 착오하여 피고의 이자채권을 위 기간까지 잘못 계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이자채권을 제2차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6. 14.까지 계산한 것은 피고의 채권원금(300만 원)이 원고의 채권원금(1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상계한 후에 피고의 채권원리금액을 제2차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계산방식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